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2022. 4.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 목 차 】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제4조(안전·보건방침)	2
제5조(재해예방의무)	2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3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3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제8조(지역총괄관리자)	3
제9조(관리감독자)	4
제10조(업무관리자)	4
제11조(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	4
제12조(업무담당자)	5
제13조(안전관리자)	5
제14조(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역)	5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7
제3장 안전·보건교육	7
제1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7
제17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8
제18조(직무교육)	8
제19조(교육결과 기록·보존)	9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9
제20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9
제21조(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9
제2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10
제23조(작업중지)	10

【 목 차 】

제24조(안전보건표지)	10
제25조(안전보건점검 등)	10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11
제26조(근로자 건강진단)	11
제27조(작업환경측정)	12
제28조(근골격계질환 예방)	12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13
제30조(보호구)	13
제31조(구급용구)	13
제3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14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14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14
제34조(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14
제3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4
제36조(비상연락망 구축)	14
제37조(재해발생현황분석 등)	14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5
제38조(위험성평가 계획의 수립)	15
제39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실행)	15
제40조(위험성평가의 주기)	15
제41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16
제8장 보칙	16
제42조(포상 및 징계)	16
제43조(문서의 보존연한)	17
제44조(규정의 개정 등)	17
제45조(규정의 준수 등)	17

【 목 차 】

부칙	17
제1조(시행일)	17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18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직종	19
[별표 3] 안전보건교육일지(예시)	20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사업장의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중·고·특수각종학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교육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적 설비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7.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부상, 사망 및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8.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감 소속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안전·보건 방침】 사업장의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은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의 안전보건사무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4.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가진다.

제5조 【재해예방 의무】 ①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2.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전문 인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배치

② 근로자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규정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이행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6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부교육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 【지역총괄관리자】 ① 사업주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총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총괄관리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보고
3. 해당 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실태조사
4. 해당 지역 사업장의 산업재해 통계분석

5. 해당 지역의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이행

- ③ 지역총괄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한다.
- ④ 지역총괄관리자는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각급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업무관리자】 ① 사업주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 및 교육지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업무관리자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은 총무담당사무관, 교육지원청은 지역총괄관리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제9조의 관리감독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 ①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부서)는 각급 학교의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교무실·행정실로 하며, 각 소속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12조 【업무담당자】 ①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급식관련 직종은 영양(교)사, 시설기타직종은 시설기타 업무담당(자)로 하며, 관련법령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통솔 범위에 근거하여 부서별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에게 지도·조언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에게 지도·조언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6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대상 교육과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 대상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안전·보건교육 종류는 다음[표]와 같다.

[표] 안전보건교육 종류

구분	교육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전보건 교육 (법29조)	근 로 자	신규채용자	8시간(일용직 1시간)
		정기교육	6시간/분기
		작업변경시	2시간(일용직 1시간)
		관리감독자 (업무관리자)	16시간/연간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현장교육
직무교육 (법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2년	집체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신규교육 34시간 보수교육 24시간/2년	

제17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정기교육 : 근로자는 매분기(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 교육 :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 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 【교육결과 기록보존】 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별표3 참조]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0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21조 【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작업안전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3조 【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긴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안전보건표지】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가 관리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보건표지 사항을 숙지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보건점검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방법은 점검표 등 별도 서식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계·기구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및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등의 상태
7.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장의 점검 결과 불안정한 시설 등이 있으면 조치사항을 해당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6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다.

⑤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누락 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1항에 따라 교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하며 유해요인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②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작업 자세 등을 유지하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가 교육 및 주지시키는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협조한다.

④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⑤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매 3년 마다 실시하고, 신설학교는 1년 이내 실시한다.

⑥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의 변경시 해당공정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①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사 혹은 납품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소분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한다.

③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최근 개정일 자료로 유지 관리한다.

제30조 【보호구】 ①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보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 시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31조 【구급용구】 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

②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필요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2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청소, 조도, 환기, 온도, 습도,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감독·조치한다.

②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적절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감독·조치한다.

제33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4조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수립·시행한다.

제35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 관련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재해발생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포함)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 【비상연락망 구축】 사업주는 비상사태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등】 사업주는 상·하반기에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38조 【위험성평가 계획의 수립】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40조 【위험성평가의 주기】

-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1조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장 보칙

제42조 【포상 및 징계】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근로자에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4. 그 밖에 상기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43조 【문서의 보존연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 제7호의 경우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직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44조 【규정의 개정 등】 사업주는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린다.

제45조 【규정의 준수 등】 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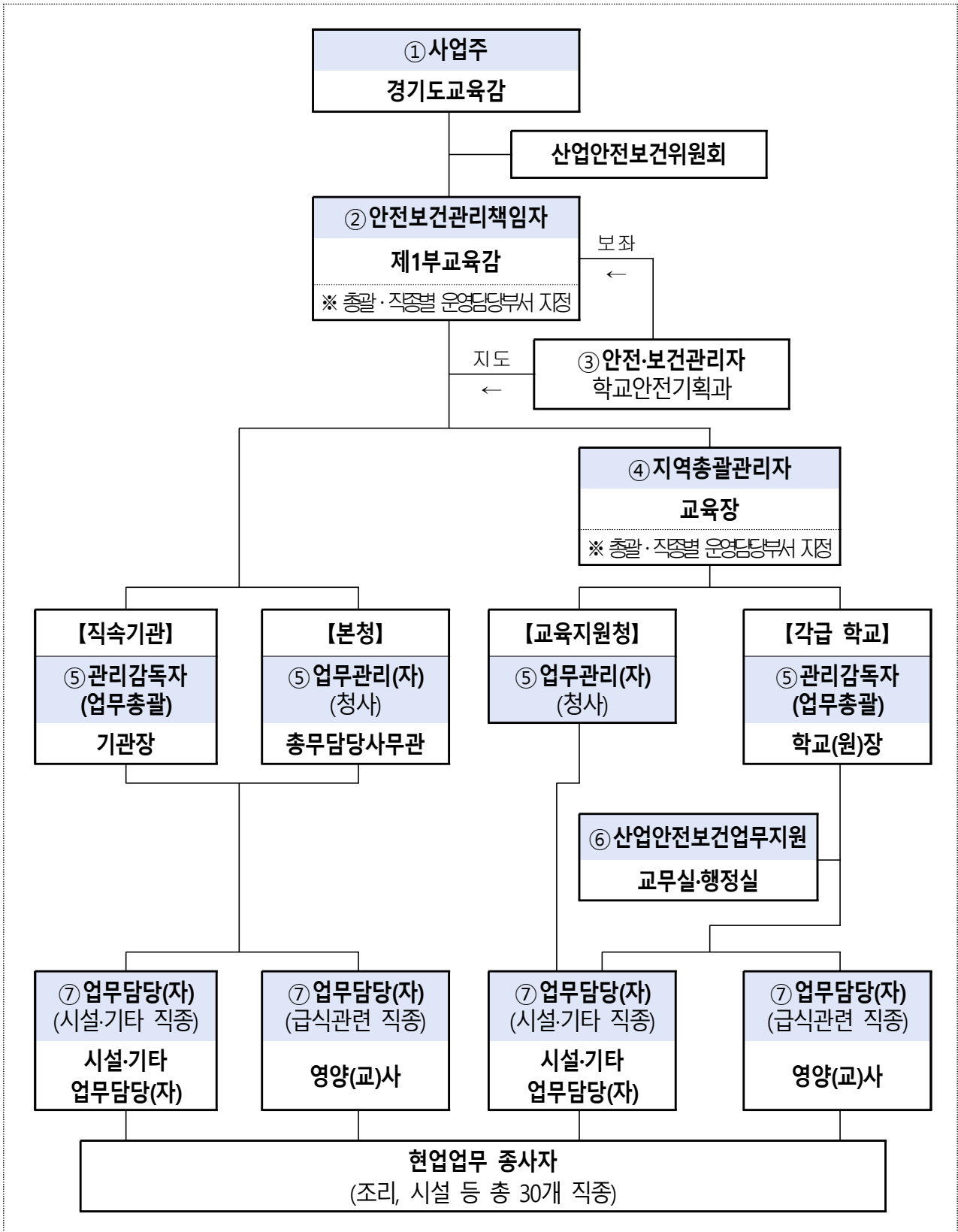
②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직종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구분	직군/직렬/직종명	근거	
교육공무원	영양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조리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조리실무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각급학교장애인일자리사업(급식보조)	고시 [별표2] 3호	
	급식배식보조원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청소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시설관리(보조원) *구육성회(시설) 포함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특수운영직군(시설경비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2호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2호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특수운영직군(시설안내원)	고시 [별표1] 1호	
	안내원	고시 [별표1] 1호	
	당직전담(경비)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2호	
	통학차량운전원	고시 [별표2] 2호	
	통학차량보조원	고시 [별표2] 2호	
지방공무원	기술직군	시설관리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농업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식품위생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공업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조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운전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방송통신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건축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전기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기계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열관리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화공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농림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국가공무원	영양교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 각 직종 대체직 포함, 수업과 행정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 제외

별표 3

안전보건교육 일지 [예시]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일자: 20 . . . 작성자 :

결 재			

교육일시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일용근로자 외: 8시간) 2. 근로자 정기교육 (□비사무직:6시간)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해당근로자: 2시간) 5. 기타(MSDS)교육 □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비고 (교육 미 실시 사유)																																																		
	대상인원																																																						
	참석인원																																																						
	미참석인원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건강 관리(각종 질환 및 응급 처치) 산업재해 인정 사례 및 예방 학교 안전 관리(전기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경고표지 등) 위험 물질 취급 관리 및 MSDS 			집체교육 (강의식)	90분																																																		
교육실시자 (자체교육)	성명	직위	교육장소																																																				
<p>■ 수강자 명단</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소속</th> <th>성명</th> <th>서명</th> <th>순번</th> <th>소속</th> <th>성명</th> <th>서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6</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7</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td> <td></td> <td></td> <td>8</td> <td></td> <td></td> <td></td> </tr> <tr> <td>4</td> <td></td> <td></td> <td></td> <td>9</td> <td></td> <td></td> <td></td> </tr> <tr> <td>5</td> <td></td> <td></td> <td></td> <td>1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순번	소속	성명	서명	순번	소속	성명	서명	1				6				2				7				3				8				4				9				5				10			
순번	소속	성명	서명	순번	소속	성명	서명																																																
1				6																																																			
2				7																																																			
3				8																																																			
4				9																																																			
5				10																																																			
<p>■ 교육사진</p>																																																							